

의안번호	2214038
의 퇴 인	조배숙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9.
추 계 번호	25C6003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7조의2 (중앙 임신·출산 지원 기관의 설치 ·운영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·출산 지원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1. 임신·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. 제7조의3에 따른 임신·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 교육 3. 임신·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. 그 밖에 임신·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	재량규정
2	안 제7조의3 (임신·출산 종합 상담 제공)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둘 수 있음 1.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.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. 임신·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. 임신의 유지·종결에 대한 상담 5. 그 밖에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	재량규정
3	안 제11조의6 (통계관리 등)	보건복지부장관이 수집·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통계 및 정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－ 임신 유지·종결 상담의 현황 및 상담사실확인서 발급현황에 대한 정보 － 기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4	안 제21조 (경비의 보조)	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위험 임신부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2 (중앙 임신·출산 지원 기관의 설치 ·운영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7조의3 (임신·출산 종합 상담 제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1조의6 (통계관리 등)	
4	안 제21조 (경비의 보조)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7조의2·제7조의3) 개정안에 따라 임신·출산지원기관과 종합상담 기관이 추가로 설치·운영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기존 기관과의 업무 조정 내용 및 신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알 수 없음
 - 보건복지부는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중앙 및 지역(2개소)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 - － 중앙·지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하고,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
 - 또한, 보건복지부는 “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”을 통하여 급작스러운 출산 및 의료적 위기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임신·출산·양육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고 있음
- (안 제11조의6)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 유지·종결, 인공 임신중절수술 관련 통계를 수집·관리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신규로 수집할 자료의 범위와 관리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(1억 7,810만원 소요)하여 그 결과를 2022년에 발표한 바 있음

- (안 제21조) 현재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원하고 있고,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(고위험 산모 이송 연계체계)을 실시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가 추가로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에 지원할 경비의 규모를 알 수 없음
 - 2025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으로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(20개소) 지원에 총 60억원을,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(3개 시·군 국고보조 50%)에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